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 가능 지역으로
수도권 내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추가〉
■ 이재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31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7
1. 기회발전특구 개요	7
2.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8
3.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재강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22.
3. 회부연월일 : 2025.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이지만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경우가 있어 해당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등과 마찬가지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수도권 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u>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u>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 ----- ----- -----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권 내 지역으로서</u> ----- ----- -----.
<신 설> <신 설>	1. <u>인구감소지역</u> 2. 「 <u>접경지역 지원 특별법</u> 」 제2조제1호에 따른 <u>접경지역</u>
<신 설>	3. 「 <u>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u> 」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u>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u>

② ~ ⑥ (생략)	<u>역주변지역</u> ② ~ ⑥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23조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¹⁾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도권 내 지역의 경우 ‘인구감소지역’²⁾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³⁾⁴⁾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한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기회발전특구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되,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대적으로 발전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4) 수도권내 인구감소지역(4): 강화, 옹진, 가평, 연천

수도권내 접경지역(10): 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비수도권과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중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 및 그 주변지역 또한 수도권 내에 위치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경우가 있어 해당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등과 마찬가지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 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⁵⁾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회발전특구제도는 지방에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설정하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은 지방의 발전을 촉진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3.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하려는 것인데,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주변지역⁶⁾은 군사시설 주변지역으로서 경제 발전이 불가피하게 정채된 부분이 있으므로 지역경제 진흥과 주민의 복리증진 측면에서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등 수도권 내 다른 낙후지역과 같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써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을 특구지정 신청 대상으로 운영하되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한해 특구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수도권 내 예외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투자의 수도권 집중화 우려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 기회발전특구제도 취지의 훼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⁷⁾⁸⁾도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 상세사항 ‘참고자료 2.’ 참조

7)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 전라북도, 강원도 등의 의견임.

8)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함께 개정안이 제안하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은 과밀억제권역인 수원, 성남, 과천, 고양, 의왕 등 수도권 주요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8

참고 1

기회발전특구 개요

- **(개념)**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 **(대상지역)**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 **(입지)** 지방정부가 투자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입지 선정
 - *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既 조성된 계획입지, 개별입지 등 모두 가능
 - **(면적)**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4.95km²(150만평), 도: 6.6km²(200만평)) 내에서 복수의 특구 신청 가능
- **(지정절차)** 지방정부(시·도지사)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산업부장관이 지정
- **(지정요건)** 기업의 입주수요,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
- **(지원내용)** 세제·재정,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
 - ①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② 특구 내 가업상속시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등 사후관리요건 완화
 - ③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 및 특구 내 창업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 매입시,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 ④ 특구 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시 법인세 감면
 - ⑤ 특구 투자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참고 2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수도권 발체)

□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24.12.24. 기준)

구분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경기도 (62개)	수원시(9동)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평동, 서둔동, 파장동
	성남시(7동)	신촌동, 고등동, 태평1동, 시흥동, 운중동, 금곡1동, 금곡2동
	과천시(1동)	문원동
	평택시(2면 · 5동)	서탄면, 진위면,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북동
	용인시 (1읍 · 3면 · 10동)	포곡읍, 이동면, 양지면, 원삼면, 역삼동, 동천동, 유림동, 중앙동, 어정동, 상갈동, 신봉동, 풍덕천1동, 죽전2동, 동부동
	이천시(1면)	마장면
	광주시(1면)	도척면
	화성시 (1읍 · 3면 · 3동)	봉담읍, 향남면, 정남면, 양감면, 진안동, 기배동, 화산동
	포천시(1면)	화현면
	의왕시(2동)	청계동, 고천동
	오산시(1동)	초평동
	양평군(1읍 · 5면)	양평읍, 용문면, 단월면, 옥천면, 개군면, 지제면
	연천군(2면)	신서면, 중면
	가평군(1읍 · 2면)	가평읍, 북면, 하면
인천광역시 (1개)	강화군(1면)	하점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24. 6. 4. 기준)

구분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인천광역시 (6개)	부평구(6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부평1동, 부평3동
경기도 (102개)	성남시(1동)	북정동
	고양시(3동)	고봉동, 관산동, 고양동
	의정부시(15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송산1동, 송산2동, 호원1동, 호원2동, 신곡1동, 신곡2동, 자금동, 녹양동, 장암동
	남양주시(2읍·2면)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조안면
	평택시 (2읍·4면·5동)	팽성읍, 안중읍, 청북면,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중앙동, 서정동, 세교동
	화성시 (1읍·2면·1동)	우정읍, 장안면, 서신면, 남양동
	파주시 (5읍·9면·2동)	조리읍, 문산읍, 파주읍, 범원읍, 교하읍, 월롱면, 광탄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적성면, 파평면, 탄현면, 진서면, 금촌1동, 금촌2동
	포천시 (1읍·9면·2동)	소흘읍, 영중면, 창수면, 영북면, 관인면, 일동면, 이동면, 군내면, 가산면, 신북면, 선단동, 포천동
	광주시(2면)	남종면, 중부면
	하남시(7동)	천현동, 감북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춘궁동, 초이동
	양주시 (1읍·4면·6동)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장흥면,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동두천시(7동)	생연1동, 생연2동, 중앙동, 보산동, 불현동, 소요동, 상패동
	연천군(2읍·6면)	전곡읍, 연천읍, 장남면, 미산면, 군남면, 왕징면, 백학면, 청산면
	양평군(1면)	양동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참고 3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관계기관	의견
행정안전부	○ 「미군공여구역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은 -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된 구역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된 부분이 있으며, 지역경제의 진흥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필요 ○ 개정안과 같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도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대상에 반영되는 경우 - 국가와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지방시대위원회	○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수도권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예외규정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 ○ 더불어,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인 수원, 성남, 과천, 고양, 의왕 등 수도권 주요도시를 포함하는바, - 개정안이 수도권 집중화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 개정안 시행 시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 가능지역이 확대되며, - 이는 기업이 수도권에 머무르거나 오히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이전할 가능성이 커져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기회발전 특구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려는 정책효과가 약화되어 장기적으로 수도권-지방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강원특별자치도	○ 이미 수도권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 개정안 시행시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취지인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소멸대응 정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 이는 14개 비수도권 시도 지역주민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